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면제〉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49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민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5.
3. 회부연월일 : 2026. 3.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국가 등이 보급하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나 소액의 학습도구의 활용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 교육 자료의 적시 활용이 지연되고 학교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생 략)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다만,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심의 면제의 세부 범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검토의견

□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육 자료로 구분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 시 단순 보조도구를 넘어 수업의 내용·방법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교수·학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¹⁾

이에 따라 학생의 학습 데이터 및 행동 데이터 등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 증가, 검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교육 효과 및 안전성 문제, 학교별 자율적 선택 확대에 따른 품질 편차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시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학교 단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학부모·교원 등의 참여를 통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²⁾

1) 현행법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거나,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소프트웨어로서, 구체적으로 AI 팽독, 똑똑! 수학탐험대, 구글 클래스룸, 캔바 등이 이에 해당함.

2) 2026년 7월 17일 기준 전체 12,213개 학교 중 12,070개(98.8%) 학교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 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현황> 참조

□ 그런데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되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일률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학교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³⁾

특히 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소프트웨어 도입 시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심의 지연으로 인한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 곤란, 안전 증가에 따른 회의 준비 및 자료 작성 부담 등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교육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원이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I 기반 맞춤형 학습 등 수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일정 요건 충족 시 심의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반복적·형식적인 심의 절차를 완화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음.

3) ‘AI 펍톡’이나 ‘똑똑! 수학탐험대’와 같이 교육부 또는 교육청 등 공공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정규 교과를 위해 사용되며,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학습 콘텐츠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선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한편, 개정안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그 취지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핵심인데, 해당 기준이 넓으면 사실상 전면 면제가 가능하고, 기준이 좁으면 실효성 없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부령의 섬세한 설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교육적 활용도가 높다거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

참고 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현황

(단위: 교, '26.7.17. 기준)

연번	지역	전체 학교 수	심의 완료 학교 수		향후 심의 예정 학교 수	
1	서울	1,363	1,343	98.5%	20	1.5%
2	전남광주	1,158	1,158	100.0%	-	-
3	부산	641	628	98.0%	13	2.0%
4	대구	468	464	99.1%	4	0.9%
5	인천	569	569	100.0%	0	0.0%
6	대전	311	307	98.7%	4	1.3%
7	울산	252	250	99.2%	2	0.8%
8	세종	109	109	100.0%	-	-
9	경기	2,621	2,603	99.3%	18	0.7%
10	강원	636	631	99.2%	5	0.8%
11	충북	490	489	99.8%	1	0.2%
12	충남	732	729	99.6%	3	0.4%
13	전북	759	757	99.7%	2	0.3%
14	경북	915	848	92.7%	67	7.3%
15	경남	997	993	99.6%	4	0.4%
16	제주	192	192	100.0%	-	-
계		12,213	12,070	98.8%	143	1.2%

자료 : 교육부